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스마트폰용 게임사업을 논의 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각자의 영업비밀과 사업정보를 상호간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 정보]**

“비밀정보”란 비밀로 지정된 유∙무형의 정보, 노하우, 데이터, 공정, 기술, 디자인, 그림, 프로그램, 공식이나 실험 데이터, 영업비밀, 가격, 기법, 알고리즘, 컴퓨터프로그램(소스코드 및 목적코드)을 포함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구두, 서면, 그래픽, 문서, 전자문서, 다이어그램,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일체의 의사소통 수단이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서, 연구프로젝트, 작업공정, 비공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 제품개발 계획, 엔지니어링, 제조, 마케팅, 사업계획, 사업전략, 서비스, 재무, 인사에 관한 정보 등 회사, 제품, 영업, 공급자, 고객, 의뢰인, 임직원, 투자자 및 사업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비밀 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에 일반 공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2. 비밀정보의 제공 이후에 비밀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정보
3. 비밀정보의 제공 당시 비밀정보수령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비밀정보의 제공 전에 서류와 기록으로 증명된 정보
4. 비밀정보 수령자가 제3자의 비밀준수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5. 비밀정보 수령자가 비밀정보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 사실이 관련 서류 및 상당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는 정보
6. 비밀정보 수령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받은 정보. 단, 비밀정보 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이전에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정보가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비밀 정보의 사용]**

1. 비밀정보 수령자는 본 사업에 관하여 의논할 목적 이외에 비밀정보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비밀정보 수령자는 본 사업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비밀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이외의 임직원 혹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 비밀정보 수령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원형, 견본, 소프트웨어, 배치도, 순서도, 도표, 도면, 설명, 기타 유형 물질을 역설계하거나 분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주의의무 정도]**

1. 비밀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 하고, 공개되거나 권한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는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해야 한다.
3. 비밀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자신의 임직원이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비밀 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복사해서는 안 된다. 승인 받은 사본에 대하여는 원본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방 당사자의 지적소유권 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경우,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는 소유하고 있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 및 그 사본을 모두 파기한다.

**제7조 [지적소유권]**

본 계약 체결 전에 각 계약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혹은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는 본 계약 체결 전 권리자의 소유로 계속 존속하며,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허락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이용하는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이 일방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타방 당사자에게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8조 [양도금지]**

계약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담당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키로 한다.

**제10조 [기타]**

1. 본 계약은 각 계약 당사자의 거래진행을 강요하지 않으며, 각 계약 당사자는 사업기회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예상된 논의를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결할 수 있다.
2. 모든 정보는 각 당사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혹은 실행에 관하 여 상대방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않는다.
3. 본 계약조항을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서면 합의서(또는 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본 계약조항은 수정,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14년 07월 28일

“갑”

대표이사 (인)

“을”

대표이사 (인)